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2003. 10. 24(금) 10:00

심 사 보 고

<조례안 2건, 일반의안 1건 >

1.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------- 1

2.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----- 3

3.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. ---------- 5

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

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: 2003. 10. 16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0. 17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46호

라. 상정일자 : 2003. 10. 23 (제10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 강창남)

가. 제안이유

○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승인에 따른 사업소 설치와 관련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사업소 신설

- 사업소명칭 :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
- 사업소소재지 :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번지
- 정원 승인(소장) :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

○ 업무 조정

- 현행 행정과에서 처리하던 거창사건 관련업무를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로 그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함.

○ 관련 조례의 개정

-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함.

①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“문화공보실”을 “문화관광과”로 “자치행정과”를 “행정과”로 “문화복지센터”를 “문화센터”로 하고 “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”를 추가한다.

②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제3호 가목 중 “산업과”를 “농정과”로 “지역경제과”를 “경제과”로 “산림과”를 “환경녹지과”로 “도시환경과”를 “지역개발과”로 “수도사업소”를 “상하수도사업소”로 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과 역사교육관 등을 갖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위령 .추모제 등 체계적인 지원.관리를 위해 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.

○ 조례의 체제, 형식,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.

4. 질의 및 답변 : 기재 생략

5. 토론 요지 : 기재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: 2003. 10. 16.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0. 17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47호

라. 상정일자 : 2003. 10. 23 (제10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 강창남)

가. 제안이유

○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의 기구 승인에 따른 군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인력증원 및 정원 조정

- 집행기구 정원 : 592명을 593명으로 1명 증원(5급 1명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(총원 606명을 607명으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사업소장 1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 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: 기 재 생 략

5. 토론 요지 : 기 재 생 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 없음
7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의안제출

○ 제출일 : 2003. 10. 16

○ 제출자 : 거 창 군 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0. 17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-49호

라. 상정일자 : 2003. 10. 23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윤생이)

가. 제안이유

○ 거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

- 시설낙후와 주차공간 미비로 침체화 되고 있는 거창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편익 시설인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편입부지 매입을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취득 대상 재산 현황

- 위치 : 원예조합(중앙리 소재), 삼화여인숙 주변
- 면적 : 7필지 1,094㎡(331평)
- 소유자 : 김한순 외 3명

○ 취득 대상 재산 내역

재산종류	재 산 소 재 지	지목	면 적	공시지가	비 고
토지	토 지 : 7 필지		1,094	309,548	
“	거창읍 중앙리 154	대지	134	58,520	
“	“ 156-4	대지	164	62,320	
“	“ 155-2	대지	53	11,660	
“	“ 157-2	대지	406	89,320	
“	“ 156-2	도로	20	4,400	
“	“ 152-6	잡종지	86	32,508	
“	“ 190-2	대지	231	50,820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, 시설낙후와 주차장 미비로 침체되고 있는 거창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설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7필지 1,094㎡의 취득 건으로,

○ 재래시장 출입로인 일방통행로를 따라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나 노점상 등이 도로를 점유해 있어 일방 통행도 자유롭지 않아 현재 차량 운행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며,

○ 예정 부지로부터 100m이내 하천변에 무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, 현 위치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활용도가 높아 주차장으로서 제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보는지, 예정대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094㎡의 면적에 승용차 몇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, 1일 주차가능 대수는 얼마로 보는지와,

○ 동 장소 외에 거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 가능한 장소가 전혀 없는 것인지 설명을 요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기 재 생 략

5. 토론 요지 : 기 재 생 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